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 제 3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8노2125 배임  
피 고 인 이규화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기소), 김○○(공판)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387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8.

###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최△△는 직접 또는 최□□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이었고, ② 피해자 최□□

의 계금지급청구권이 명백히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바 배임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최□□ 사이의 2017. 2. 20.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31쪽)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최△△를 이 사건 순번계 22번 구좌의 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순번계 22번 구좌 계금 및 24번 구좌 계금 전체와 피고인의 피해자 최□□에 대한 채권 사이에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순번계 22번 구좌의 계원 역시 피해자 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처럼 피해자 최△△가 계주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순번계 가입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계불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순번계 22번 구좌의 계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가사 피해자 최△△가 위 22번 구좌의 계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최□□가

위 22번 구좌의 계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 최△△에 대한 배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2017. 2. 20. 이전부터 피해자 최□□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 최□□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정산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순번계 24번 구좌의 계금 1,685만 원을 피해자 최□□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해자 최□□는 2013. 2. 20.경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최□□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2. 20. 피고인에게 송금한 2,973만 원은 ‘노래방 건물에 대한 공동 투자금’ 명목이었다는 것인 바(피해자 최□□ 진술 녹취서 제29쪽 참조<sup>1)</sup>) 피해자 최□□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최△△에 대한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이 아니라 중간계주인 최□□를 통하여 계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피해자 최△△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최□□에 대한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최□□로부터 받을 채권과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다만 피해자 최□□는 원심 법정에서 위 2,973만 원 중 약 1,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된바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_\_\_\_\_

                 판사      박○○ \_\_\_\_\_

                 판사      설○○ \_\_\_\_\_